

「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제3조(지원대상 물품) ① (생략)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「국세징수법」 제30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3조(지원대상 물품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영 제248조의2제1항 및 「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제7조의3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후 신고한 물품으로써 <u>검사대상 수출물품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「국세징수법」 제30조 및 「지방세징수법」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	<p>○ 중고자동차, 폐기물 등 적재지 공항만 보세구역 등에 반입하여 신고하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에 대한 검사비용 지원</p> <p>○ 법령 개정사항 반영</p>
<p>제4조(지원대상 검사장소) 영 제187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“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검사 장소”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	<p>제4조(지원대상 검사장소) ① 영 제187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“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검사 장소”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	<p>○ 제2항 신설에 따라 조문의 본문을 제1항으로 변경</p> <p>○ 적재지 공항만 보</p>

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	<p>4. 「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제7조의3에 따라 수출물품을 검사하는 장소</p> <p>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장소에서 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세관장이 검사 가능한 별도의 장소로 이고하여 검사하거나 보세운송하여 검사하는 장소</p> <p>② 제1항 각호의 검사장소가 법 제173조에 따른 세관검사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세구역 등에 반입 후 신고하는 중고 자동차, 폐기물 등을 검사하는 장소와 검사가 곤란하여 검사가능 장소로 이고 또는 보세운송하여 검사하는 장소를 지원대상에 추가</p> <p>○물품의 특성상 검사 가능장소로 이고 또는 보세운송하는 경우 등 해당 장소가 세관검사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추가</p>
<p>제6조(검사비용 지급액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관세청장은 적정한 예산집행을 위해 매 회계연도 상반기에 지원대상 검사비용을 <u>세관별로 조사하여야 하며, 조사된 자료 등을 고려하여</u></p>	<p>제6조(검사비용 지급액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세관별로 조사하여 검사비용 지급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.</u></p>	<p>○물가인상 등을 고려한 지급기준 현실화</p>

<p>검사비용 지급기준을 마련하거나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신청할 수 있다.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	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	
<p><u>부칙</u>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	<p><u>부칙</u>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1년 0월 00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</p>	
<p>[별표] 검사결과 검사비용 지원제외 대상 물품 (현행과 같음)</p>	<p>[별표] 검사결과 검사비용 지원제외 대상 물품 (붙임 1)과 같이 개정한다.</p>	<p>○ 용어정리</p>

(붙임 1)

[별표]

검사결과 검사비용 지원제외 대상 물품

구 분	검사결과			개정이유
	구분	번호	위반사항	
제3조제1항 제1호 물품 (관리대상화물)	1. 검색기검사	1-①	타기관 이첩(원자력안전위원회 등)	용어정리 (통고처분 →자체조사/ 조사의뢰 →조사 의뢰)
	2. 즉시검사 (검색기검사 후 개장검사 포함)	2-①	안보위해물품, 금지품 위장수입 적발(조사의뢰)	
		2-②	품명위장·타물품혼입밀수(조사의뢰)	
		2-③	위험물품·검역물품 등 적발(조사의뢰)	
		2-④	수량·중량 과부족(조사의뢰)	
		2-⑤	상표권등 지식재산권 위반 혐의물품(조사의뢰)	
2-⑥		원산지 표시 위반(조사의뢰)		
제3조제1항 제2호 물품 (부두직통관 화물)	1. 품목분류 위반	1-①	고세율 품목으로 세번변경(자체조사 또는 조사의뢰)	
		1-②	내국세 해당품목으로 세번변경(자체조사 또는 조사의뢰)	
	2. 수량중량상이	2-①	수량·중량 과·부족(자체조사 또는 조사의뢰)	
		2-②	무단반출(자체조사 또는 조사의뢰)	
	3. 세율(액) 적용 위반	3-①	동일세번내 고세율로 변경(자체조사 또는 조사의뢰)	
		3-②	동일세번내 내국세 부과(자체조사 또는 조사의뢰)	
	4. 관세감면분납 적용 위반	4-①	감면불허(자체조사 또는 조사의뢰)	
	5. 가격신고 위반	5-①	가격·운임·보험 등 누락과표 과세(자체조사 또는 조사의뢰)	
	6. 품명위장	6-①	수입금지품 위장수입	
		6-②	미신고물품 위장수입	
	7. 세관장확인 사항 위반	7-①	세관장확인대상으로 변경(동일세번)	
		7-②	세관장확인대상으로 변경(세번변경)	
		7-③	수입요건확인서류 허위구비(자체조사 또는 조사의뢰)	
		7-④	수입요건확인서류 미구비(자체조사 또는 조사의뢰)	
	8. 국민건강사 회안전 적발	8-①	마약류 적발(조사의뢰)	
		8-②	총포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적발(자체조사 또는 조사의뢰)	
		8-③	총포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적발(통관보류 등 기타조치)	
		8-④	국민건강·사회안전 집중관리 품목 적발(자체조사 또는 조사의뢰)	
		8-⑤	국민건강·사회안전 집중관리 품목 적발(통관보류 등 기타조치)	
		8-⑥	기타 국민건강·사회안전 등 침해물품 수입(통관보류)	
	9. 원산지표시 위반	9-①	원산지 미표시	
		9-②	원산지 허위표시	
		9-③	원산지 오인표시	
		9-④	원산지 표시 부적정	
9-⑤		원산지 표시 손상		
9-⑥		원산지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		
10. 품질 등 허위·오인표시	10-①	허위표시 (통관보류)		
	10-②	오인표시 (통관보류)		
11. 상표권 위반	11-①	위조상표 부착물품 수입(자체조사, 조사의뢰 또는 통관불허)		
	11-②	상표권 침해(진정상품)(통관불허)		
12. 기타 지식재	12-①	상표권 이외 기타 지식재산권 침해		

구분	검사결과			개정이유
	구분	번호	위반사항	
	신권 위반			
	13. 협업·분석 검사	13-①	불법제품(미인증, 허위표시, 미표시, 기타위반표시)	
		13-②	불량제품(부적합제품)	
		13-③	유해성분기준치 초과	
		13-④	인증결과 조사의뢰(자체조사 포함)	
	14. 방사능 검 사(표면 방사 선량을 측정)	14-①	방사능검사에 의한 유해물품 적발(통관보류)	
	15. 수리 후 분석 및 품목분류 질의	15-①	수리 후 분석의뢰 또는 품목분류 질의	
16. 정밀검사	16-①	파괴검사에 의한 유해물품 적발(통관보류)		
	16-②	비파괴 검사에 의한 유해물품 적발(통관보류)		
제3조제1항 제3호 물품 (수출적재지 검사화물) 및 제4호 물품 (적재지 반 입 후 신고 검사화물)	1. 품목분류 상이	1-①	세번 상이(환급대상)	
	2. 수량·중량 상이	2-①	수량·중량 과(부)족(조사의뢰)	
	3. 원산지 규정 위반	3-①	원산지 허위 표시	
		3-②	원산지 오인 표시 및 표시 부적정	
	4. 지식재산권 위반	4-①	위조 상표 수출(조사의뢰)	
		4-②	상표권 침해	
		4-③	저작권·의장권 등 위반(조사의뢰)	
	5. 위장 수출	5-①	수출금지품 위장 수출	
		5-②	미신고물품 혼입 및 위장 수출	
	6. 현품검사 곤란	6-①	수출신고 수리전 적재로 현품검사 곤란	
		6-②	미제조로 현품검사 곤란	
	7. 전략물자 수출통제 위반	7-①	전략물자 수출통제 규정 미준수	
	8. 중고차량 불법수출 위반	8-①	차대번호 상이 신고	
		8-②	기수출 차량 신고 오류	
		8-③	도난·범죄 차량 적발	
	9. 수리 후 분석	9-①	정확한 품목분류 곤란 또는 성분분석을 요하는 물품	
10. 신고 오류	10-①	신고물품 일부(전체) 누락 신고 오류		
11. 가맹구분 부정	11-①	원상태 수출 부적정		
	11-②	계약상이 수출 부적정		
12. 스마트폰 불법수출 위반	12-①	도난/분실 스마트폰 적발(5개 미만)		
	12-②	도난/분실 스마트폰 적발(5~9개)		
	12-③	도난/분실 스마트폰 적발(10개 이상)		

※ [별표] 제3조제1항제1호 물품의 검사결과 “1-①”, 제3조제1항제2호 물품의 검사결과 “8-③”, “8-⑤”, “15-①” 및 제3조제1항제3호 물품의 검사결과 “9-①”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비용 지급을 보류한 후 최종 검사결과가 [별표]의 검사결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(당초 검사결과 포함) 검사비용을 지급한다.